



# *Web Contents*



2024년 04월 25일 14시 25분



## 구비서류

### ☑ 국내제작 건설기계

1. 건설기계 신규신청서
2. 양도증명서
3. 건설기계제작증
4. 건설기계제원표
5.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
6. 보험가입증명서(의무보험 및 종합보험)
7. 사용본거지 근거서류(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)
8. 세금계산서
9. 차대각자 2부 - 영업용의 경우 소속 대여회사 관리계약서
10. 사업자등록증 사본

### ☑ 수입건설기계

1. 건설기계신규신청서
2. 양도증명서
3. 수입면장 기타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
4. 건설기계제원표
5.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
6. 보험가입증명서(의무보험 및 종합보험)
7. 사용본거지 근거서류(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)
8. 차대각자 2부
9. 세금계산서
  - 신규수입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건설기계형식확인 검사후, 중고수입은 대한건설안전원에서 신규검사 후 등록
  - 영업용의 경우 소속 대여회사 관리계약서
10. 사업자등록증 사본

### ☑ 공통사항 : 대리인이 오실 경우에는

1. 차량소유자 인감증명서
2. 위임장(인감도장날인)
3. 대리인 신분증 지참
4. 사업자등록증사본(법인)

## 등록비용

- 수수료 : 수입증지 4,000원 수입인지 3,000원(양도증명서)
- 등록세 : 공급가액의 1%(교육세 : 등록세의 20%)
- 취득세 : 공급가액의 2%(농특세 : 취득세의 10%)
- 국민주택채권 : 공급가액의 0.5%

## 신청기간

건설기계등록신청은 취득한(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판매한 날) 날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함.

(<http://www.mokpo.go.kr>)

---

## 위반시 과태료

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, 운행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(법제40조)이 부과됨.

---

COPYRIGHT © MOKPO-SI. ALL RIGHT RESERVED.

***MokPo - Si***  
***Web Contents***

